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7
----------	-----

2022. 4. 25.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13.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 4.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4.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2441(2021. 9. 17)호]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업무 체계 정립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11조, 제22조, 제33조, 제44조, 제55조, 별지 제1~7호)
 - 안건의 제출 및 사전검토,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적극행정 교육 및 적극행정 우수 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7조,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개정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9명 이상 45명 이하(조례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상위법령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명 이상의 위원(민간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의견 제시 요청에 따른 안건의 제출과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의 안건의 사전 검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 13조와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사항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 타당성이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임 참고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717
----------	-----

2022. 4. 25.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모집의 이유와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여 소집 근거를 추가함.

2. 주요골자

가. 안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되”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되”로 수정한다.

나.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되”로 수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u>필요시</u>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